

#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

| 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| 벌칙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· 승인제(제14조)      | 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고능력순위 1,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· 보건계획 수립(이사회 보고 및 승인) 및 이행 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(제15조~19조)           | ☑ 사업의종류, 상시근로자수,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※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 : 시행령 제24조, 별표2,3,5 참조  | ☑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제24조)                     | ☑ 안전 ·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·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· 운영 ※ 대상 : 시행령 별표9 참조  | ☑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(제25조)                   | ☑ 안전보건관리 조직,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※ 대상 :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 | ☑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보건교육(제29조, 제77조)                  | ☑ 정기(24시간 이상) · 채용 시(8시간 이상) · 작업변경 시(2시간 이상) · 특별교육(16시간 이상) 실시 ※ 교육과정별 교육시간: 시행규칙 별표4 참조<br>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(2시간 이상)              | ☑ 5백만원 이하 과태료<br>※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|
| 위험성평가의 실시(제36조)                     | ☑ 사업장의 유해 ·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 · 조치, 기록 · 보존<br>※ 고용노동부고시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참조   | -  |
| 안전보건표지 설치 · 부착(제37조)                | ☑ 유해 · 위험한장소 · 시설 · 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 시 지시 · 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· 부착   | ☑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 · 보건조치(제38조, 제39조)               | ☑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 · 보건조치 실시<br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 | 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<br>(사망 시 7년 이하, 1억원 이하) |
|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(제41조)             | ☑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작업중지 및 대피(제51조)                     | 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· 보건조치  | 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대재해 발생 시(제54조)                     | ☑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 · 보건조치 실시<br>☑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 | 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<br>☑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|
|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(제57조)            | ☑ 산업재해발생 은폐 금지<br>☑ 발생 개요 · 원인 및 보고 시기,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<br>※ 산업재해조사표 :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참조  | ☑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<br>☑ 1천오백만원 이하 과태료      |
| 도급인 안전 · 보건조치(제63조)                 | ☑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· 보건조치 실시  | 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<br>(사망 시 7년 이하, 1억원 이하) |
| 건설공사발주자 산재예방 조치(제67조)               | ☑ 건설공사 계획, 설계,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수형태근로자 안전 · 보건 조치(제77조)            | 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· 보건조치  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달종사자 안전 · 보건조치(제78조)               | ☑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·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· 보건조치  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맹본부 산재예방조치(제79조)                   | 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 | ☑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해 · 위험 기계 · 기구 방조조치(제80조)          | ☑ 대상 : 예초기, 원심기, 공기압축기, 금속절단기, 지게차, 포장기계(진공포장기, 래핑기한정), 작동 부분 돌기,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,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☑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인증(제84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☑ 대상 : 프레스, 전단기 및 절곡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,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의 방호장치,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보호구   | 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검사(제93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☑ 대상 : 프레스, 전단기 및 절곡기, 크레인(정격하중 2톤 이상)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산업용 원심기, 롤러기(밀폐형 제외), 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),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(제110조, 제114조, 제115조) | ☑ MSDS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<br>☑ MSDS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<br>☑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| ☑ 5백만원 이하 과태료<br>☑ 5백만원 이하 벌금<br>☑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|
| 작업환경측정(제125조)                       | ☑ 유해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※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: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로자 건강진단(제129조, 제130조)              | ☑ 일반건강진단 ·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<br>※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: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※ 시기 및 주기 :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| 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